

2022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

2021. 12.



2022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

< 2021년 운영지침과 달라진 사항 >

- ▶ 독립생계 소득기준 : 도시 2인가구 ('21년) 월1,853천원 → ('22년) 월1,956천원 등
- ▶ 농지규모별 농업소득 : 0.5ha미만 ('21년) 월169천원 → ('22년) 월178천원 등
- ▶ 심사사례를 반영하여 심사기준 정비
 - 독립생계 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 산정 방법 명시
 - (원칙)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 모두 포함
 - (예외) 등록의무자(배우자, 자녀 포함), 6개월 이상 해외체류자 제외
 -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하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고지거부 근거 마련
 - 이혼한 배우자 등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고지거부 허가

1 독립생계 소득기준

- 독립생계 소득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¹⁾의 60%(가구수 감안)로 함
 - 농촌의 경우 도·농간의 소득비율을 감안, 동 기준의 70% 수준인 경우 고지거부 가능(최근 5년간 통계청 평균소득 기준²⁾)

< 독립생계 소득기준(월) >

(단위: 천원)
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도시지역	1,166	1,956	2,516	3,073	3,614	4,144	4,668
농촌지역	816	1,369	1,761	2,151	2,530	2,901	3,268

- ※ 8인 이상 가구의 독립생계 소득기준 : 1인 증가시마다 524천원씩 증가(8인가구: 5,192천원)
- * '21년 1인가구 (도시) 1,096천원, (농촌) 767천원
- ※ 소득액은 세금 공제 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며, 천원 미만은 절사
- ※ 농촌지역 구분 : 고지거부 대상자의 주소지가 '읍·면'이면 농촌지역이며, 대도시에 포함되어도 동일하게 적용
- 외국 거주자의 경우 우리나라와의 1인당 국민소득(GNI) 비율을 반영하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고지거부 가능

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

2) 통계청 최근 5년간 도·농간 소득비율('16년~'17년 70%, '18년 74%, '19년 66%, '20년 70%)의 평균 70%

○ 소득 계산법

✓ 총소득 = ① 일반소득 +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

① 일반소득 = 근로소득 + 연금소득 + 임대소득 + 사업소득 + 농업소득 등

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= 금융 자산, 부동산 자산 공시가격(거주주택 제외) × 소득 환산율(기준일 CD 금리)

※ 일반소득이 없는 재산의 경우만 소득환산(중복금지)

○ 농업소득은 농지원부를 확인하여 농지규모별 소득액 산정

〈농지규모별 소득액〉

(단위: 천원)

경지규모	0.5ha 미만	0.5-1.0ha 미만	1.0-1.5ha 미만	1.5-2.0ha 미만	2.0-3.0ha 미만	3.0-5.0ha 미만	5.0-7.0ha 미만	7.0-10.0ha 미만	10.0ha 이상
단위환산 ha→㎡	5천㎡ 미만	5천-1만㎡ 미만	1만-15만㎡ 미만	15만-20만㎡ 미만	2만-3만㎡ 미만	3만-5만㎡ 미만	5만-7만㎡ 미만	7만-10만㎡ 미만	10만㎡ 이상
연간 농업소득	2,136	6,722	11,991	17,225	20,712	29,350	37,707	38,676	57,790
월 소득	178	560	999	1,435	1,726	2,446	3,142	3,223	4,816

※ 통계청 2020년 농가경제 통계자료

○ 일반소득 외에 금융 및 부동산 자산(현재 거주하는 주택 제외)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액 산정

- 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금융 및 부동산 자산의 소득환산율(금융 투자협회 시중은행 CD금리)로 환산한 금액과 일반 소득액을 합산

※ CD금리 적용 기준일 : 2022년 정기변동신고대상자 중 신규허가 및 재심사 신청자는 '21. 12. 31. 현재, 수시신청자는 등록기준일 현재 CD금리 적용

○ 가구원 수는 등록기준일(재심사의 경우 신청일, 이하 '기준일'이라고 함)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

- 고지거부 대상자인 직계존속과 주소지가 같은 의무자 및 의무자의 배우자, 의무자의 자녀

- 기준일 현재 취업,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 체류하여 6개월 이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

② 고지거부 심사기준

【독립생계소득 일반요건】

- 직계존속: 나이, 취업 등 직업유무, 보유재산의 정도, 취업·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
- 직계비속: 나이,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여부, 취업·사업 등 직업이 있어야 하고, 취업·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

⇒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지거부 엄격 심사

1. 독립생계

○ (부모) 등록의무자와 주소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독립생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정기적인 월 소득이 있으면 허가

- 부모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 가능

※ 최소 1년간 소득의 월 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함

○ (자녀)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기준일 이전 최소 1년 이상 등록의무자(등록의무자의 배우자 포함)와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고지거부 허가

- 국내에 등록의무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하고 있으나, 실제로 타지(외국 포함)에서 취업·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타지 거주 및 소득 입증(부동산임대차계약서, 재직확인서 등)시 허가 가능

※ 최소 1년간 소득의 월 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함

○ (조부모) 부모가 부양하는 조부모는 부모가 독립적인 생계유지능력이 있으면 허가 가능, 부모가 부양하지 않는 조부모는 별도의 독립적인 생계유지능력이 있어야 허가 가능

○ (손자녀) 자녀가 부양하는 손자녀는 자녀가 독립적인 생계유지능력이 있으면 허가 가능, 자녀가 부양하지 않는 손자녀는 별도의 독립적인 생계유지능력이 있어야 허가 가능

-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녀의 신생 손자녀는 다음 재심사 때까지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

2. 타인 부양

1) 직계존속

- 직계존속의 주소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주소가 같은 경우, 그 타인이 부양능력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허가
 - 부양하는 타인의 부양능력 유무는 타인의 부양가족수(고지거부자 포함)를 기준으로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여부를 판단
 - ※ 최소 1년간 소득의 월 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함
- 직계존속의 주소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, 독립생계유지가 가능한 소득이전이 증명(통장입금 내역 등) 되면 허가 가능
 - ※ 타인(들)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소득이 이전되어야 함
- 부양자(타인)의 소득 및 소득이전액, 피부양자의 소득 합산 가능

2) 직계비속

-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하는 미성년 자녀는 이혼한 배우자나 양부모 등 자녀를 부양하는 타인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고지거부 허가 가능

3. 기타 특별한 사유

- 연락두절·행방불명된 직계 존·비속, 이(재)혼한 직계 존속인 경우로서 등록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음을 입증한 경우 허가 가능
- 기타 특별한 사유로서 등록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지거부 허가
 - ※ 단, 관련 정황을 상세히 기재하고,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

4. 고지거부 대상자가 고지거부 취소통보를 받은 경우

- 재산심사 등을 통해 고지거부자가 등록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로 고지거부 취소를 통보하고, 고지거부자는 고지거부 취소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를 하여야 함

붙임 소득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(예시)

- (원칙) 고지거부 신청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(생활현황, 소득현황 등)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충분히 첨부
- (예외) 재심사의 경우 연금소득이 있는 직계존속, 이(재)혼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심사시에 제출한 증빙자료를 활용하여 고지거부 허가 가능

일반소득	<p><농·축산업소득이 있는 경우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지자경증명(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) 또는 농지원부, 출하증명(공제내역 기재) 등 <p><사업소득이 있는 경우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소득금액 증빙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소득금액 증빙서류: 국세청 소득금액증명(사업소득자용) 등 <p><근로소득이 있는 경우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직증명서 및 소득금액 증빙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소득금액 증빙서류: 국세청 소득금액증명(근로소득자용)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재직기관) 또는 소득확인서(재직기관) 등 ▶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) <p><연금소득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금수급증명서(수령 기간, 월 수령 금액 기재) 등 <p><금융소득이 있는 경우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통장사본(정기적 이자소득이 드러나야 함) 등 - 기타 금융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<p><임대소득이 있는 경우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대차계약서 사본, 소득금액증명(국세청), 통장사본(이체내역) 등
재산소득	<p>※ 직계존속만 해당</p> <p><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준일 현재 부동산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등기사항증명서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 등 <p><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준일 현재 금융자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잔액증명서, 유가증권잔고증명, 통장사본 등
기타 특별한 사유	<p>관련 정황을 상세히 기재하여, 연락두절·행방불명, 이(재)혼 등 등록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허가 신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인사유서, 형제·친척의 진술(인우증명), 사실관계 증빙자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혼인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주민등록초본, 법원판결문 등

※ 민원서류(주민등록등본, 소득금액증명, 농지원부 등) 관련 인터넷사이트

- 정부24(<http://www.gov.kr>)

※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격제공 인터넷사이트

-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(<http://www.realtyprice.kr>)